진도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16

제출연월일 : 2023년 3월 일
제 출 자 : 진도군수

1. 제정이유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인구감소지역대응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3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변경·실적점검·평가 등의 사항
  주민 생활편의 증진 권역 설정 운영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등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4조, 제8조)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재적 과반수의 요청으로 회의 소집
○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안 제11조)
  -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결과 : 2023. 2. 22. ~ 3. 14.(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분석평가서 김도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 붙임

9. 참고사항 :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3. 3. 15. 원안의결

진도군 조례 제 호

진도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도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생활인구를 말한다.

제3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진도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4.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관한 시책 연구과 자문
5.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

한 사항

6.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7.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

8.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인구정책실장, 안전생활지원과장, 총무과장, 주민복지과장, 가족행복과장, 관광과장, 문화예술체육과장, 도시개발과장, 보건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진도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

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개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2.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군수는 진도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3항과 영 제13조제2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설치·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범위와 절차·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3조(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쇄 : 심동훈 / 인구정책실 (2023-03-15 14:45:19)

제43회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2023. 4. 20.(목) - 4. 22.(토)

진 도 군

수신 인구정책실장

(경유)

제목 2023년 제4회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통보

2023년 제4회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2023. 3. 15.)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아 래 □

의안번호	차 치 법 규 명	심의결과	소 관 부 서	비고
2023-9	진도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원안의결	인구정책실	서면

붙임 심의 의결서 1부. 끝.

진 도 군 수

진도군수인

공무직 유진미 법무의회팀장 박현주 기획홍보실장 전결 2023. 3. 15. 허수철

협조자

시행 기획홍보실-3315 (2023. 3. 15.) 접수 인구정책실-5857 (2023. 3. 15.)

우 58915 전라남도 진도군 신노읍 철마길 25 / http://www.jindo.go.kr

전화번호 061-540-3047 팩스번호 061-540-3049 / jindo660@korea.kr / 비공개(5)

내 삶을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온(ON)!

문서편리카드: 인구정책실-5857 1/1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서

□ 심사결과

번 호	제 목	신 청 자	심 의 요 지	심의결과
2023 -9	진도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인구정책실 장	○ 제정이유 -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원안의결

위와 같이 의결함.

2023. 3. 15.

구 분	직 위	성 명	가(可)	부(否)	부(否)일 경우 사유
위 원 장	군 수	김 희 수			
부위원장	부 군 수	우 홍 섭			
위 원	기 획 홍 보 실 장	허 수 철			
〃	인 구 정 책 실 장	차 제 남			
〃	안 전 생 활 지 원 과 장	허 상 무			
〃	총 무 과 장	허 규 진			
〃	세 무 회 계 과 장	박 계 천			
〃	민 원 봉 사 과 장	허 승 목			
〃	수 산 지 원 과 장	황 규 웅			
〃	진 도 개 축 산 과 장	강 경 화			
〃	해 양 항 만 과 장	김 창 대			
〃	경 제 에 너 지 과 장	이 용 복			
〃	주 민 복 지 과 장	이 미 애			
〃	가 족 행 복 과 장	오 승 민			
〃	관 광 과 장	정 기 문			
〃	문 화 예 술 체 육 과 장	박 유 수			
〃	건 설 과 장	박 재 현			
〃	도 시 개 발 과 장	박 정 현			
〃	환 경 수 질 과 장	박 병 찬			
〃	산 림 휴 양 과 장	장 제 필			
〃	보 건 소 장	조 기 주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김 상 득			
〃	농 수 산 유 통 사 업 단 장	박 남 규			
〃	시 설 관 리 사 업 소 장	신 영 환			
〃	국 민 해 양 안 전 과 장	이 석 찬			

진도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 규정

○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미첨부 사유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작성자

○ 소　　속: 인구정책실

○ 직　　급: 행정7급

○ 성　　명: 김동훈

인구정책실장　　차제남 (서명)

제43회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2023. 4. 20.(목) ~ 4. 22.(토)

진 도 군

수신 인구정책실장
(경유)
제목 「진도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1. 인구정책실-(2023. 2. 22.) 호와 관련입니다.

2. 「진도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진 도 군 수 관인생략

공무직 이은하 가족정책담장 박지현 가족행복과장 전결 2023. 3. 2. 오승민
협조자
시행 가족행복과-8419 (2023. 3. 2.) 접수 인구정책실-4365 (2023. 3. 2.)
우 58915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 http://www.jindo.go.kr
전화번호 061-540-1265 팩스번호 061-540-0504 / leh13315@korea.kr / 대국민 공개
내 삶을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온(ON)!
문서관리카드: 인구정책실-4365 1/1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전남진도010			
정 책 명	진도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부서명	인구정책실		
	담당자명	김동훈	전화번호	061-540-3817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2월 2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인구정책실)	진도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개정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진도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3월 02일

진도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은하/061-540-1265)

인구정책실장 귀하

진 도 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진도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 「진도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2. 기획홍보실장 및 총무과장께서는 예고문을 군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진도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2. 22. ~ 3. 14.(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 : 인구정책실 인구청년팀(☎ 061-540-3817)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진도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진 도 군 수 관인생략

수신자 ㅅ, ㄹ, ㅈ

주무관	김동훈	인구청년팀장	고재근	인구정책실장	신설 2023. 2. 20. 차체남
협조자					

시행 인구정책실-3696 (2023. 2. 20.) 접수

우 58915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바길 25 / http://www.jindo.go.kr

전화번호 061-540-3817 팩스번호 061-540-3846 / culs94@korea.kr / 대국민 공개

내 삶을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온(ON)!

- 끝 -

군민이 주인! 살기좋은 진도

보배섬 진도

문서번호	인구정책실-3633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23. 2. 20.
공개여부	공개

담당자	인구청년팀장	인구정책실장	부군수	군수
김동희	고광수	최세덕	위	김준옥

법무의회팀장 박현주 기획홍보실장 허유석 협조

진도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

Jindo

진 도 군
(인구정책실)

진도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

1 제정 이유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 제정(안)

구 분	내 용
● 제3조 인구감소지역대응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변경·실적점검·평가 등에 관한 사항 - 주민 생활편의 증진 권역 설정 운영 -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 문화·체육시설의 설치·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지원에 관한 사항 -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제4조 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성별 고려 15명 - 위원장 : 부군수 - 당연직 위원 : 인구정책실장, 안전생활지원과장, 총무과장, 주민복지과장, 가족행복과장, 관광과장, 문화예술체육과장, 도시개발과장, 보건소장 - 위촉직 위원 : 군수가 위촉 ① 군의원, ②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 추천, ③ 그 밖에 전문성과 역량 있는 사람
● 제8조 위원회의 운영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재적 과반수 요청으로 회의 소집 - (개의) 재적과반수 출석, (의결) 출석과반수 찬성

구 분	내 용
● 제11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①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제12조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이전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설치·이전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지원의 범위·절차·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
● 제13조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 아래의 경우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 ①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3 제 정 조 례 안

○ 붙임 1

4 향후 추진일정

○ 2023년 2월 : 입법예고

○ 2023년 3월 : 조례규칙심의회

○ 2023년 3월 : 의회 의결 및 조례 공포

붙임 진도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진도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17

제출연월일 : 2023년 3월 일
제 출 자 : 진도군수

1. 제정이유

○ 2023. 4. 1. 시행 예정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점심시간 휴무제 운영 등으로 민원실의 운영 시간이나 운영방법을 달리 정할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3조)

○ 민원실의 설치·휴무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민원실의 연장 운영, 현장 민원실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8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5. 관련부서 의견 : 의견없음

6. 입법예고 사항: 2023. 2. 1. ~ 2. 21.(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성별영향평가 결과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붙임(미첨부 사유서)

9. 참고사항: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3. 3. 10. 수정의결

진도군 조례 제　　호

진도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면(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2. "민원 사전예약제"란 온라인·비대면 처리가 불가능한 인감·여권 등 업무에 대해 민원인이 전화·팩스·인터넷 등으로 사전 예약 후 민원실 운영시간 중 방문 시 우선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현장민원실"이란 군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시간의 범위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①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

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군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로 이전·설치하는 방안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방법 안내인력 배치를 포함한다)

6. 민원 사전예약제의 운영

7.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8.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9.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② 군수는 점심시간 동안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 공간의 위치와 대기 순번표 발급 방법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7조, 제8조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진 도 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제2회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통보

2023년 제2회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2023. 3. 10.)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아 래 □

의안번호	자 치 법 규 명	심의결과	소 관 부 서	비고
2023-2	진도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의결	민원봉사과	서면
2023-3	진도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의결	민원봉사과	서면
2023-4	진도군 향토음식점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수정의결	관 광 과	서면

붙임 심의 의결서 각 1부. 끝.

진 도 군 수 관인생략

수신자 민원봉사과장, 관광과장

공무직 유진미 법무의회팀장 박현주 기획홍보실장 전결 2023. 3. 13. 허수철
협조자

시행 기획홍보실-3136 (2023. 3. 13.) 접수 민원봉사과-13425 (2023. 3. 13.)
우 58915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 http://www.jindo.go.kr
전화번호 061-540-3047 팩스번호 061-540-3049 / jindo660@korea.kr / 비공개(5)

내 삶을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온(ON)!

조례 · 규칙심의회 심의 의결서

□ 심의결과

번호	제목	신청자	심의요지	심의결과
2023-2	진도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민원봉사과장	○제정이유 - 본청 및 읍면 민원실의 점심시간 휴무제 운영에 따른 근거 마련 ○주요내용 - 민원실의 설치, 휴무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 - 민원실 연장운영, 현장 민원실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수정의결 (제안설명자는 문서상 참여자원의견에)

위와 같이 의결함

2023. 3 .10 .

구분	직위	성명	가(可)	부(否)	부(否)일 경우 사유
의장	군수	김희수			
부의장	부군수	우흥섭			
위원	기획홍보실장	허수철			
〃	인구정책실장	차제남			
〃	안전생활지원과장	허상무			
〃	총무과장	허규진			
〃	세무회계과장	박계천			
〃	민원봉사과장	허승목			
〃	수산지원과장	황규용			
〃	진도개축산과장	강경화			
〃	해양항만과장	김창대			
〃	경제에너지과장	이용복			
〃	주민복지과장	이미예			
〃	가족행복과장	오승민			
〃	관광과장	정기문			
〃	문화예술체육과장	박윤수			
〃	건설과장	박재현			
〃	도시개발과장	박경현			
〃	환경수질과장	박병찬			
〃	산림휴양과장	장재필			
〃	보건소장	조기주			
〃	농업기술센터장	김상득			
〃	농수산유통사업단장	박남규			
〃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환			
〃	국민해양안전관장	이석찬			

진도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 규정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없으므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3. 작성자

○ 소　　속: 민원봉사과

○ 직　　급: 행 정 7 급

○ 성　　명: 박 영 임

민원봉사과장　　허 승 목　(서명)

진 도 군

수신 민원봉사과장
(경유)
제목 「진도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1. 민원봉사과-5021(2023. 1. 31.) 호와 관련입니다.

2. 「진도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은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에 해당하므로, 제출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진 도 군 수 **관인생략**

공무직 어은하 가족정책팀장 박지현 가족행복과장 전결 2023. 2. 1. 오승민
협조자
시행 가족행복과-3869 (2023. 2. 1.) 접수 민원봉사과-5479 (2023. 2. 1.)
우 58915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 http://www.jindo.go.kr
전화번호 061-540-1265 팩스번호 061-540-0504 / leh13315@korea.kr / 대국민 공개
내 삶을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온(ON)!
문서관리카드 민원봉사과-5479 1/1

전라남도 진도군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법령]

법령명	진도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분	제정(√) 개정( )				
형식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 조례(√) 규칙( )				
소관부서	부서장	부서명	민원봉사과	성명	허승목
				전화번호	061-540-3601
	담당자	부서명	민원봉사과	성명	박영위
				전화번호	061-540-3604
입법일정(예정)	관계기관 회의	2023-01-16 ~ 2023-01-31 (15 일간)			
	입법예고	2023-02-01 ~ 2023-02-21 (20 일간)			
	법제담당 등	2023-02-01 ~ 2023-02-21 (20 일간)			
분임자료	1. 법령(안)(신·구 조문 비교표 포함)				

구 분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작성 제외 법령	ㄱ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 - 예) 기구, 정복, 물품, 수당, 보수, 급식, 문서 및 직인, 서무, 수수료 징수, 민원사무 처리기간 등	■ 예 □ 아니오	민원실 운영시간 및 운영방법 제정
	ㄴ 벌금,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법령 - 예) 벌금, 과태료 등의 상하한선 규정,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등	□ 예 ■ 아니오	
	ㄷ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전시 관련 법령	□ 예 ■ 아니오	
	ㄹ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해 제·개정되는 법령	□ 예 ■ 아니오	
	ㅁ 국호·국기·연호, 전례, 국경(정부기념)일, 의전에 관한 법령 - 예) 선거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국경일에 관한 법률 등	□ 예 ■ 아니오	
	ㅂ 행정절차, 소송절차, 재판에 관한 법령 예) 과태료 처분 불복 관련 이의절차 조항, 과태료 처분 관련, 세목처분 조항, 효력 발생 기간 및 기한 등	□ 예 ■ 아니오	
	ㅅ 법령시행일, 효력에 관한 법령	□ 예 ■ 아니오	
	ㅇ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및 문구 등 단순 변경	□ 예 ■ 아니오	
	ㅈ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령 - 예) 여성농어민인욕성법,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등	□ 예 ■ 아니오	
	ㅊ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대상(법제처)	□ 예 ■ 아니오	
	ㅋ 일몰조항만 개정되는 법령 - 예) 일몰조정 관련 기준년도의 변경, 삭제 등	□ 예 ■ 아니오	

* 법제처 심사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추정한 일정 기재

** 지방자치단체는 법제담당 등 기관특성에 맞게 수정 가능

진 도 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진도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진도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2. 기획홍보실장 및 총무과장께서는 예고문을 군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진도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2. 1. ~ 2. 21.(20일)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진도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민 원 봉 사 과 장

수신자 노. 로. 도

주무관	박영엽	민원행정담당	이금아	민원봉사과장	진걸 2023. 1. 31. 허승목
협조자					

시행 민원봉사과-5254 (2023. 1. 31.) 접수

우 58915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 http://www.jindo.go.kr

전화번호 061-540-3604 팩스번호 061-540-3691 / vovo6252@korea.kr / 대국민 공개

내 삶을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온(ON)!

군민이 주인! 살기좋은 진도

문서번호	민원봉사과-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23. 1.
공개여부	공개

담당자	민원행정팀장	민원봉사과장	부군수	군수	결재
박영임	이	차승옥	서	김	
협조	법무의회팀장		기획홍보실장		

「진도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

□ 제정 이유

○ 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 제3항

○ **점심시간 휴무제 운영** 등으로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을 달리 정할 경우 조례로 제정(2023.4.1.시행)**

※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에 의함(민원제도혁신과-4465호와 관련)

□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민원실의 설치, 휴무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민원실 연장 운영,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8조)

□ 향후 추진계획

○ 조례(안) 입법계획 결재 : 2023. 1월

○ 조례(안) 관련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 2023. 1. ~ 2월

○ 조례(안) 심의 및 의회 제출 : 2023. 2월

○ 조례(안) 의회 의결 및 공포(시행) : 2023. 3월

Jindo

진 도 군
[민원봉사과]

「진도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

1 제정 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 제3항에 따라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을 달리 정할 경우 2023. 4. 1.이전에 조례 제정 필요

○ 본청 및 읍면 민원실의 점심시간 휴무제 운영에 따른 근거 마련

※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의함(민원제도혁신과-4465호와 관련임)

2 추진 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민원실의 설치)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 제9조(민원실)

3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목적, 정의(민원실, 민원 사전예약제, 전자민원창구, 통합전자민원창구, 현장민원실)

○ 민원실의 설치, 휴무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에 민원실 설치
- 민원실은 9~18시까지 운영(점심시간 12~13시)

○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민원실의 연장 운영, 현장 민원실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 군민 불편 최소를 위해 점심시간 휴무 안내 및 편의시설 마련
- 1일 2시간이내 연장 운영, 현장 민원실 설치 운영

4 향후 추진일정

○ 조례(안) 입법계획 결재 : 2023. 1월
○ 조례(안) 관련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 2023. 1.~ 2월
○ 조례(안) 심의 및 의회 제출 : 2023. 2월
○ 의회 의결 및 공포(시행) : 2023. 3월

진도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18

제출연월일 : 2023년 3월 일
제 출 자 : 진도군수

1. 제정이유

○ 2023. 4. 1. 시행 예정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민원처리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원처리담당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군수의 책무 및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제5조)

○ 지원사항 및 기준,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 및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5. 관련부서 의견 : 의견없음

6. 입법예고 사항: 2023. 2. 1. ~ 2. 21.(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성별영향평가 결과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붙임(미첨부 사유서)

9. 참고사항: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3. 3. 10. 수정의결

진도군 조례 제 호

진도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진도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등을 말한다.
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대응부서를 말한다.
3. "비상대응팀(반)"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 근무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반) 구성·운영
4. 녹음전화 설치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폭행방지, 상호 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
7.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8.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
9.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② 군수는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할 수 있다.

1. 민원실 등에 행정 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
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
4. 인사가점 부여,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
5.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휴게를 위한 필요집기 등 구비)

6.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기관차원의 포상, 교육연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제9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구제 및 보호하기 위해 전담대응팀을 통하여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10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폭언·폭행 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

2. 사회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원 기준(제6조제2항 관련)

지 원 구 분	근 거	지 원 한 도	세 부 기 준
심리상담	제6조제1항 제1호	상담 치료·연계 (전문기관 위탁 운영 등)	
의료비	제6조제1항 제2호	연 30만원 범위 내	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진료일 3개월 이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6조제1항 제3호	일 2시간 범위 내	
법률지원 (법률상담, 고소·고발, 손해배상 등)	제6조제1항 제4호	법률상담서비스 연계 (고문변호사 제도 등) 예산의 범위 내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제6조제1항 제5호	예산의 범위 내 (전문기관 위탁 운영시)	
그 밖의 사업	제6조제1항 제7호	예산의 범위 내	

[별지 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제7조 관련)

발 생 원			부 서 명	
피해 공무원		○ 직급(위): ○ 성 명:	연 락 처	
민원 내용	건명	○		
	민원 요지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피해 내용	피해 사실	○ ○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입증 자료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지원 신청 내용	신청 내용	○심리상담□ 의료비□ 휴식시간□ 법률지원□ 교육및연수□ ○의료비 지원 신청 시 은행명 _____ , 계좌번호 _____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및 문책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서명 또는 인)		
	증빙 자료	□ 진단서 □ 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기타( )		
확인자 (부서장)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진도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 도 군 수 귀하

진 도 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제2회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통보

2023년 제2회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2023. 3. 10.)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아 래 □

의안번호	자 치 법 규 명	심의결과	소 관 부 서	비고
2023-2	진도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의결	민원봉사과	서면
2023-3	진도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의결	민원봉사과	서면
2023-4	진도군 향토음식점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수정의결	관 광 과	서면

붙임 심의 의결서 각 1부. 끝.

진 도 군 수 관인생략

수신자 민원봉사과장, 관광과장

공무직 협조자	유진미	법무의회팀장	박현주	기획홍보실장	전결 2023. 3. 13. 허수철

시행 기획홍보실-3136 (2023. 3 13.) 접수 민원봉사과-13425 (2023. 3. 13.)

우 58915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 http://www.jindo.go.kr

전화번호 061 540 3047 팩스번호 061-540-3049 / jindo660@korea.kr / 비공개(5)

내 삶을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온(ON)!

조례 · 규칙심의회 심의 의결서

[ ] 심의결과

번 호	제 목	신청자	심 의 요 지	심의결과
2023-3	진도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민원봉사과장	○제정이유 - 민원처리 담당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지원사항 및 기준,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 -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	원안의결

위와 같이 의결함

2023. 3 .10.

구 분	직 위	성 명	가(可)	부(否)	부(否)일 경우 사 유
의 장	군 수	김 희 수			
부 의 장	부 군 수	우 홍 섭			
위 원	기 획 홍 보 실 장	허 수 철			
〃	인 구 정 책 실 장	차 제 남			
〃	안 전 생 활 지 원 과 장	허 삼 무			
〃	총 무 과 장	허 규 진			
〃	세 무 회 계 과 장	박 계 천			
〃	민 원 봉 사 과 장	허 승 목			
〃	수 산 지 원 과 장	황 규 용			
〃	진 도 개 축 산 과 장	강 경 화			
〃	해 양 항 만 과 장	김 창 대			
〃	경 제 에 너 지 과 장	이 용 복			
〃	주 민 복 지 과 장	이 미 예			
〃	가 족 행 복 과 장	오 승 민			
〃	관 광 과 장	정 기 문			
〃	문 화 예 술 체 육 과 장	박 윤 수			
〃	건 설 과 장	박 재 현			
〃	도 시 개 발 과 장	박 경 현			
〃	환 경 수 진 과 장	박 병 찬			
〃	산 림 휴 양 과 장	장 재 필			
〃	보 건 소 장	조 기 주			
〃	농 업 기 술 센 터 장	김 삼 득			
〃	농 수 산 유 통 사 업 단 장	박 남 규			
〃	시 설 관 리 사 업 소 장	김 영 환			
〃	국 민 해 양 안 전 관 장	이 석 찬			

진도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 지원(안 제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으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 소　　속: 민원봉사과

○ 직　　급: 행 정 7 급

○ 성　　명: 박　영　임

민원봉사과장　　허 승 목　(서명)

진 도 군

수신 민원봉사과장
(경유)
제목 「진도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1. 민원봉사과-5020(2023. 1. 31.) 호와 관련입니다.

2. 「진도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은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에 해당하므로, 제출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진 도 군 수 관인생략

공무직 이은하 가족정책팀장 박지현 가족행복과장 전결 2023. 2. 1 오승민
협조자
시행 가족행복과-3868 (2023. 2. 1.) 접수 민원봉사과-5478 (2023. 2. 1.)
우 58915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 http://www.jindo.go.kr
전화번호 061-540-1265 팩스번호 061-540-0504 / leh13315@korea.kr / 대국민 공개
내 삶을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온(ON)!
문서관리카드 민원봉사과-5478 1/1

전라남도 진도군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법령]

법령명	진도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분	제정(√) 개정( )				
형식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 조례(√) 규칙( )				
소관부서	부서장	부서명	민원봉사과	성명	허승목
				전화번호	061-540-3601
	담당자	부서명	민원봉사과	성명	박영인
				전화번호	061-540-3604
입법일정(예정)	관계기관 협의	2023-01-16 ~ 2023-01-31 (15 일간)			
	입법예고	2023 02 01 ~ 2023-02-21 (20 일간)			
	법제담당 등	2023-02-01 ~ 2023-02-21 (20 일간)			
분임자료	1. 법령(안)(신·구 조문 비교표 포함)				

구 분		해당 이부	주요 내용
사성제외법령	ㄱ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 - 예) 사무, 기록물, 물품, 수당, 보수, 감사, 문서 및 관인, 신분증, 수수료 징수, 민원사무 처리기간 등	■ 예 □ 아니오	민원처리 담당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함
	ㄴ 벌금,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법령 - 예) 벌금, 과태료 등의 상하한선 규정,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등	□ 예 ■ 아니오	
	ㄷ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전시 관련 법령	□ 예 ■ 아니오	
	ㄹ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해 제·개정되는 법령	□ 예 ■ 아니오	
	ㅁ 국호·국기·연호, 전례, 국경(정부기념)일, 의전에 관한 법령 - 예) 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국경일에 관한 법률 등	□ 예 ■ 아니오	
	ㅂ 행정절차, 소송절차, 재판에 관한 법령 - 예) 과태료 처분 불복 관련 이의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관련, 즉결처분 조항, 효력 발생 기간 및 기한 등	□ 예 ■ 아니오	
	ㅅ 법령시행일, 효력에 관한 법령	□ 예 ■ 아니오	
	ㅇ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및 문구 등 단순 변경	□ 예 ■ 아니오	
	ㅈ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령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성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등	□ 예 ■ 아니오	
	ㅊ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대상(법제처)	□ 예 ■ 아니오	
	ㅋ 일몰조항만 개정되는 법령 - 예) 인몰조항 유효 기간연도의 연장, 삭제 등	□ 예 ■ 아니오	

* 법제처 심사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추정한 일정 기재
** 지방자치단체는 법제담당 등 기관특성에 맞게 수정 가능

진 도 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진도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진도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2. 기획홍보실장 및 총무과장께서는 예고문을 군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진도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2. 1. ~ 2. 21.(20일)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진도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진 도 군수

수신자 노, 로, 도

주무관 박명임 민원행정팀장 이금아 민원봉사과장 전결 2023. 1. 31. 허승록
협조자

시행 민원봉사과-5253 (2023. 1. 31.) 접수

우 58915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 http://www.jindo.go.kr
전화번호 061-540-3604 팩스번호 061-540-3691 / vovo6252@korea.kr / 대국민 공개

내 삶을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온(ON)!

군민이 주인! 살기좋은 진도

문서번호	민원봉사과-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23. 1.
공개여부	공개

담당자	민원행정팀 상	민원봉사과 상	부 군 수	군 수	결재
박영일	이	하승복	우희섭	김	
협 조	법무의회팀장 박현주		기획홍보실장		

「진도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

□ 제정 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23.4.1.시행

○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호·지원하기 위함

※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에 의함(민원제도혁신과-2796호와 관련임)

□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 **지원사항 및 기준, 지원신청 및 결정,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9조~10조)

□ 향후 추진계획

○ 조례(안) 입법계획 결재 : 2023. 1월

○ 조례(안) 관련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 2023. 1. ~ 2월

○ 조례(안) 심의 및 의회 제출 : 2023. 2월

○ 조례(안) 의회 의결 및 공포(시행) : 2023. 3월

Jindo

진 도 군
[민원봉사과]

「진도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

1 제정 이유

○ 2023. 4. 1. 시행예정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해

○ 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의함(민원제도혁신과-2796호와 관련임)

2 추진 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행안부, 2022.7.12.)

3 주요 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5조)

- 목적, 정의(민원 처리 담당자, 전담대응팀, 비상대응팀), 적용범위

○ 지원사항 및 기준,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 지원사항 및 기준(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이나 치유 필요시 지원)

· 심리상담, 의료비, 휴식시간·공간, 법률지원 등

- 지원신청 및 결정(7일 이내)

-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안전시설·장비 확충) 및 근무여건 개선 등

· CCTV, 비상벨, 녹음전화, 안전유리 설치 등

○ 위법행위 등 법적대응 및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 전담대응팀 운영, 민원인간 상호 존중 문화 조성

4 향후 추진일정

○ 조례(안) 입법계획 결재 : 2023. 1월

○ 조례(안) 관련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 2023. 1.~ 2월

○ 조례(안) 심의 및 의회 제출 : 2023. 2월

○ 의회 의결 및 공포(시행) : 2023. 3월

진도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19

제출연월일 : 2023년 3월 일

제 출 자 : 진도군수

1. 전부개정이유

○ 「소비자기본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진도군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자 보호 시책 추진을 위한 규정 마련

2. 주요내용

○ 제명「진도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진도군 소비자 보호 조례」로 한다.

○ 조례안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소비자 기본권리 및 책무(안 제3조 ~ 제4조)
- 군수의 책무(안 제5조)
- 위해방지, 정보제공, 공공거래질서확립 등(안 제6조 ~ 제9조)
- 소비자단체의 업무, 육성지원(안 제10조 ~ 제11조)
- 소비자보호 협력, 위해물품 제공금지 등(안 제12조 ~ 제16조)
- 소비자상담실 및 피해보상기구의 설치운영 등(안 제17조 ~ 제22조)
- 소비자정책위원회설치, 실무위원회, 의견청취 (안 제23조 ~ 제30조)

3. 전부개정안 : 붙임

4. 관계법령 : 「소비자기본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사항** : 2023. 2. 1. ~ 2. 21.(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결과 통보 공문)
- ❍ 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계획서 : 붙임
-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 붙임(미첨부 사유서)

9. **참고사항** :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3. 3. 13. 원안의결

진도군 조례 제 호

진도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도군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진도군 소비자 보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비자","사업자" 및"소비자단체"의 용어의 정의는 「소비자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소비자 기본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권리를 갖는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등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제4조(소비자의 책무) ①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관계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3.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4.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제2장 소비자의 권익보호

제6조(위해의 방지) ① 군수는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소명하게 하

고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자에게 수거·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정보제공) ① 군수는 소비자 기본생활 필수품목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과 수급상황 등 정보를 수집하고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등의 정보를 관계기관·단체·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공거래질서 확립) 군수는 관계부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소비자교육) ① 군수는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보급 및 정보제공 등 교육, 홍보, 행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 등은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장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제10조(소비자단체의 업무)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비자 보호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4. 소비자의 교육

5. 소비자 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 정보제공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 권고

6. 기타 군수가 위탁하는 사항

②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보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① 군수는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마친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4장 사업자의 의무

제12조(소비자보호 협력 등) ① 사업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자는 그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군의 소비자보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소비자단체의 소비자보호 업무추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위해물품의 제공금지) ① 사업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 위해 또는 손해를 미치는 상품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자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해의 방지, 품질 및 기술의 향상,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상품의 표시) 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소비생활을 위하여 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상품의 성분·성능·가격·용도·원산지표시·사용방법·유효기간·피해보상규정 등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계량의 적정화) ① 사업자는 상품등의 공급에 있어 소비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계량행위나 불량계량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군수는 소비자가 제1항의 불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이를 위반시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거짓·과장광고 및 선전의 제한) 사업자는 광고의 기준에 위반하여 상품의 내용과 성능에 관한 거짓 과장광고를 하거나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광고나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소비자의 피해구제

제17조(소비자상담실 및 피해보상기구의 설치운영) 군수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군 및 소비자단체·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처리)

① 소비자가 물품 등의 가격·품질·안정성·표시·중량·거래방법·거래조건 등

으로 인하여 건강상의 위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기관·한국소비자원·소비자단체 등(이하"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소비자 상담실에 서신·방문·전화·전신·기타 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행정기관 등은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 환불, 시정, 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19조(자료의 검사·제출 요구) ① 군수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사실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시 국립 또는 공립시험·검사기관에 관계물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소비자 피해구제 처리요령 및 절차) 군수는 소비자 피해구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피해구제 처리의 중지) 소비자 피해구제가 접수된 것 중 당사자간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22조(소비자 피해조정) 군수는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사항 중 사실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합의 권고 불응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제23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소비자보호 및 군민생활안정을 위한 시책 및 물가 등을 자문·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소비자보호 및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대표와 학계 및 관계전문가, 진도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실·과·소장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물가업무 소관 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 시책에 관한 사항
2. 소비자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기타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에 관한 주요시책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군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 사용료
2. 하수도 사용료
3. 공업용수 사용료
4. 교통요금
5.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 및 쓰레기 봉투 가격
6. 주차요금(공영주차장)
7.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제26조(회의) ① 위원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기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제출하는 안건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회의 중 사안이 경미한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제2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물가업무 소관 과장이 되고, 실무간사는 물가업무 소관 팀장이 되며, 실무위원은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기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 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소비자 또는 관계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9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진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진도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진 도 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제3회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통보

2023년 제3회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2023. 3. 13.)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아 래 □

의안번호	자 치 법 규 명	심의결과	소 관 부 서	비고
2023-5	진도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경제에너지과	서면
2023-6	진도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원안의결	경제에너지과	서면
2023-7	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환경수질과	서면
2023-8	진도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의결	환경수질과	서면

붙임 심의 의결서 각 1부. 끝.

진 도 군 수 관인생략

수신자 경제에너지과장, 환경수질과장

공무직 유진미 법무의회팀장 박현주 기획홍보실장 전결 2023. 3. 13. 허수철
협조자
시행 기획홍보실-3209 (2023. 3. 13.) 접수 환경수질과-11720 (2023. 3. 14.)
우 58916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6 / http://www.jindo.go.kr
전화번호 061-540-3047 팩스번호 061-540-3049 / jindo660@korea.kr / 비공개(6)

내 삶을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온(ON)!

조례 · 규칙심의회 심의 의결서

□ 심의결과

번 호	제 목	신 청 자	심 의 요 지	심의결과
2023-5	진도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 제 에너지 과 장	○전부개정이유 - 소비자 권익증진 및 보호 시책추진 규정 마련 ○주요내용 - 제명「진도군 소비자 보호 조례」로 개정 - 정보제공·교육·단체육성지원 등 소비자 시책추진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등	원안의결

위와 같이 의결함

2023. 3. 13.

구 분	직 위	성 명	가(희)	부(좀)	부(좀)일 경우 사 유
의 장	군 수	김 희 수			
부의장	부 군 수	우 흥 섭			
위 원	기 획 홍 보 실 장	허 수 철			
〃	인 구 정 책 실 장	차 계 남			
〃	안 전 생 활 지 원 과 장	허 상 무			
〃	총 무 과 장	허 규 진			
〃	세 무 회 계 과 장	박 계 천			
〃	민 원 봉 사 과 장	허 승 욱			
〃	수 산 지 원 과 장	명 규 웅			
〃	진 도 개 축 산 과 장	강 경 화			
〃	해 양 항 만 과 장	김 참 대			
〃	경 제 에 너 지 과 장	어 용 복			
〃	주 민 복 지 과 장	이 미 예			
〃	가 족 행 복 과 장	오 승 면			
〃	관 광 과 장	정 기 문			
〃	문 화 예 술 체 육 과 장	박 윤 수			
〃	건 설 과 장	박 제 현			
〃	도 시 개 발 과 장	박 정 현			
〃	환 경 수 질 과 장	박 병 찬			
〃	산 림 휴 양 과 장	장 계 필			
〃	보 건 소 장	조 기 주			
〃	농 업 기 술 센 터 장	김 상 득			
〃	농수산유통사업단장	박 남 규			
〃	시 설 관 리 사 업 소 장	김 영 환			
〃	국 민 해 양 안 전 관 상	이 석 찬			

【별첨 2】

진도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 규정

○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2. 미첨부 사유

○ 조례안 시행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됨.

3. 작성자

○ 소속 : 진도군청 경제에너지과

○ 직급 : 지방행정 9급

○ 성명 : 허진웅

경제에너지과장 이용복

진 도 군

수신 가족행복과장
(경유)
제목 「진도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반영계획서 제출

가족행복과-5106(2023.2.7.)호와 관련하여 「진도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반영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반영계획서 1부. 끝.

진 도 군

주무관	허진용	지역경제팀장	확현아	경제에너지과 전결 2023. 2. 8 장	이용복

협조자

시행 경제에너지과-5131 (2023. 2. 8.) 접수

우 58915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원마길 25, 진도군청 / http://www.jindo.go.kr

전화번호 061-540-6407 팩스번호 061-540-6449 / jindo1810@korea.kr / 대국민 공개

내 삶을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온(ON)!

- A -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3A전남진도003			
정 책 명	진도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부서명	경제에너지과		
	담당자명	업무담당자	전화번호	061-540-6407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24조(위원회 구성)는 성별영향평가 지표 3. 성별균형참여에 해당함 따라서 제24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구성시 성별균형참여를 명시해야 함.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제2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27조(실무위원회)는 성별영향평가 지표 3. 성별균형참여에 해당함 따라서 제27조 실무위원회 구성시 성별균형참여를 명시해야 함.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실무위원회는 당연직 업무담당자를 실무위원회로 위촉하는 사항이므로 성별을 고려할 수 없음.
3	제9조(소비자의교육) 1항 중 계몽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지식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은 사람을 가르쳐서 깨우침이라 정의하고 있으므로 해당표현보다는 가치중립적 표현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함.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제9조(소비자교육) ① 군수는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보급 및 정보제공 등 교육,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2023년 02월 08일

경제에너지과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진 도 군

수신 경제에너지과장
(경유)
제목 「진도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1. 경제에너지과-3848(2023. 1. 31 .) 호와 관련입니다.

2. 「진도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하오니, 그 반영계획서를 2023. 2. 22.(수) 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외의 반영계획서 제출방법 (GIA 시스템)
1. 나의페이지 〉 나의할일 〉 성별영향평가대기 〉 나의과제 - 검토의견통보서의 상태값인 [통보 (개선)] 클릭
2. 검토의견통보서의 개선의견 내용을 확인 후 오른쪽 하단의 「반영계획서 작성」 단추를 클릭하여 반영 계획 및 결과 작성 후 저장
3. 저장 단추 오른쪽의 기안 단추를 클릭하여 체크리스트 (성별영향평가서) 기안 단계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안 결재 진행

※ 시스템 사용 문의 : GIA시스템 콜센터 (T. 02-3789-4450)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2023A전남신도003) 1부. 끝.

진 도 군 수 관인생략

공무식 이문하 가족정책팀장 (대결 2023. 2. 7. 박지현) 가족행복과장 전결
협조자
시행 가족행복과-5108 (2023. 2. 7.) 접수 경제에너지과-4906 (2023. 2. 7.)
우 58915 전라남도 진도군 신도읍 철마길 25 / http://www.jindo.go.kr
전화번호 061-540-1265 팩스번호 061-540-0504 / leh13315@korea.kr / 공개
내 삶을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온(ON)!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전남진도003			
정 책 명	진도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부서명	경제에너지과		
	담당자명	업무담당자	전화번호	061-540-6407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1월 3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경제에너지과)	○ 체크리스트 및 성별영향평가서 진 ○ 조례 개정안 검토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ㅣㅣ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24조(위원회 구성)과 제27조(실무위원회)는 성별영향평가 지표 3. 성별균형참여에 해당함. -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 등 명칭 불문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해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함)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제24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제27조 실무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참여를 명시하여야 함. ○ 한편, 제9조(소비자의교육)에 "군수는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정보의 제공 등 계몽활동과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였음. - 국립국어원 표준대국어사전에서는 '계몽'을 "지식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은 사람을 가르쳐서 깨우침"이라 정의하고 있음. - 이에 계몽활동이라는 용어보다는 "~지식보급 및 정보제공 등 교육, 홍보, 행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가치중립적인 표현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함.			

구분	해당 내용	개선안	검토사유

	(제·개정 법령안)	(법령 수정안)	
1	제2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소비자보호 및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대표와 학계 및 관계전문가, 진도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실·과·소·단·관장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하 생략)	제2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소비자보호 및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대표와 학계 및 관계전문가, 진도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실·과·소·단·관장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하 생략)	지표 3. 성별균형 참여
2	제2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이하 생략)	제2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하 생략)	지표 3. 성별균형 참여
3	제9조(소비자교육) ① 군수는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등 계몽활동과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9조(소비자교육) ① 군수는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보급 및 정보제공 등 교육, 홍보, 행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권고사항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3년 2월 22일 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2월 07일

진도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은하/061-540-1265)

경제에너지과장 귀하

진 도 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진도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진도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2. 기획홍보실장과 총무과장은 붙임 예고문을 군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군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진도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2. 1. ~ 2. 21.(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 : 경제에너지과 지역경제팀(☎ 061-540-6407)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진도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 도 군 수 진도군수인

수신자 노, 로, 도

주무과 허찬물 지역경제팀장 곽현아 경제에너지과 장길 2023. 1. 30. 참 이용욱

협조자

시행 경제에너지과-3427 (2023. 1. 30.) 접수

우 58915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돌마길 25, 진도군청 / http://www.jindo.go.kr

전화번호 061-540-6407 팩스번호 061-540-6419 / jindo1810@korea.kr / 대국민 공개

내 삶을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온(ON)

문서번호	경제에너지과-5401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23. 1.
공개구분	비공개(5)

담당자	지역경제팀장	경제에너지과장	부군수	군수	결재
허잔웅	박현아	이용복	기호섭	김태흠	
협조	법무의회담장 박현주	기획홍보실장 차우진			

진도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계획

Jindo

진 도 군
(경제에너지과)

진도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계획

Ⅰ 전부개정 이유

○ 「소비자기본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진도군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소비자 보호 시책 추진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운영코자 함.

Ⅱ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소비자 기본권리 및 책무(안 제3조~제4조)

○ 군수의 책무(안 제5조)

○ 위해의 방지, 정보제공, 공공거래질서 확립 등(안 제6조~제9조)

○ 소비자단체의 업무, 육성지원(안 제10조~제11조)

○ 소비자보호 협력, 위해물품 제공금지 등 (안 제12조~16조)

○ 소비자상담실 및 피해보상기구의 설치운영 등(안 제17조~제22조)

○ 소비자정책위원회설치, 실무위원회, 의견청취 등(안 제23조~제30조)

Ⅲ 전부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Ⅳ 관계 법령

○ 「소비자기본법」

Ⅴ 향후 추진계획

○ 2023. 02. : 입법예고

○ 2023. 03. : 조례규칙 심의회, 의회 의결 및 조례 공포

○ 붙임 전부개정 조례(안)

진도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20

제출연월일 : 2023년 3월 일

제 출 자 : 진도군수

1. 제정이유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 규정에 의거 진도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적용범위 및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제4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업주의 협조, 협력체계 구성 등 (안 제5조 ~ 제7조)

○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산업재해 예방지원사업(안 제8조 ~ 제9조)

○ 안전보건지킴이,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제10조 ~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사항 : 2023. 2. 15. ~ 3. 7.(20일간) / 제출 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결과 통보 공문)
- ❍ 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계획서 : 붙임
-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 붙임(미첨부 사유서)

9. 참고사항 :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3. 3. 13. 원안의결

진도군 조례 제 호

진도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보건지킴이"란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진도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군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산업재해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성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밖에 군수가 산업재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단, 각 호의 사업 추진 시 성별, 연령, 인종, 장애 등 근로자의 특성 및 산업 분야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기타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진도군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진도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진도군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수립 및 평가

2.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의 추진

3. 안전보건지킴이의 구성·운영

4.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인증

5.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진도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진도군 노사민정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 도 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제3회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통보

2023년 제3회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2023. 3. 13.)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아 래 □

의안번호	자 치 법 규 명	심의결과	소 관 부 서	비고
2023-5	진도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경제에너지과	서면
2023-6	진도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원안의결	경제에너지과	서면
2023-7	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환경수질과	서면
2023-8	진도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의결	환경수질과	서면

붙임 심의 의결서 각 1부. 끝.

진 도 군 수 관인생략

수신자 경제에너지과장, 환경수질과장

공무직	유진미	법무의회팀장	박형주	기획홍보실장	전결 2023. 3. 13. 허수철
협조자					

시행 기획홍보실-3209 (2023. 3. 13.) 접수 환경수질과-11720 (2023. 3. 14.)

우 58916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6 / http://www.jindo.go.kr
전화번호 061-540-3047 팩스번호 061-540-3049 / jindo660@korea.kr / 비공개(6)

내 삶을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온(ON)!

조례 · 규칙심의회 심의 의결서

□ 심의결과

번 호	제 목	신청자	심 의 요 지	심의결과
2023-6	진도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경 제 에너지 과 장	○제정이유 - 각종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근로자 등의 안전 및 보건 유지 및 증진 ○주요내용 - 안전보건지킴이 및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 운영 - 산업재해예방대책수립 및 예방지원사업추진 등	원안의결

위와 같이 의결함

2023. 3. 14.

구 분	직 위	성 명	가(可)	부(否)	부(否)일 경우 사유
의 장	군 수	김 희 수			
부 의 장	부 군 수	우 홍 섭			
위 원	기 획 홍 보 실 장	허 수 철			
〃	인 구 정 책 실 장	차 계 남			
〃	안 전 생 활 지 원 과 장	허 상 무			
〃	총 무 과 장	허 규 진			
〃	세 무 회 계 과 장	박 계 천			
〃	민 원 봉 사 과 장	허 승 목			
〃	수 산 지 원 과 장	황 규 용			
〃	진 도 개 축 산 과 장	강 정 화			
〃	해 양 항 만 과 장	김 창 대			
〃	경 제 에 너 지 과 장	이 용 복			
〃	주 민 복 지 과 장	이 미 예			
〃	가 족 행 복 과 장	오 승 민			
〃	관 광 과 장	정 기 문			
〃	문 화 예 술 체 육 과 장	박 윤 수			
〃	건 설 과 장	박 제 헌			
〃	도 시 개 발 과 장	박 정 현			
〃	환 경 수 질 과 장	박 병 찬			
〃	산 림 휴 양 과 장	장 재 필			
〃	보 건 소 장	조 기 주			
〃	농 업 기 술 센 터 장	김 상 득			
〃	농 수 산 유 통 사 업 단 장	박 남 규			
〃	시 설 관 리 사 업 소 장	김 영 환			
〃	국 민 해 양 안 전 관 장	이 석 찬			

진도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미첨부 근거규정

○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미첨부 사유

○ 조례안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므로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됨

□ 작성자

○ 소속 : 진도군청 경제에너지과

○ 직급 : 지방행정 9급

○ 성명 : 허진웅

경제에너지과장 이 용 복

진 도 군

수신 가족행복과장
(경유)
제목 「진도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반영계획서 제출

진도군 가족행복과-7629(2023.2.24.)호와 관련하여 「진도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반영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반영계획서 1부. 끝.

진 도 군 수 인

주무관 허진웅 지역경제협창 과원아 검제에너지과 전결 2023. 3. 3.
협조자 장 이용록

시행 경제에너지과-8314 (2023. 3. 3.) 접수

우 58915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청마길 25, 진도고청 / http://www.jindo.go.kr

전화번호 061-540 6407 팩스번호 061-540 6449 / jindo1810@korea.kr / 대국민 공개

내 삶을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온(ON)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3A전남진도006			
정 책 명	진도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부서명	경제에너지과		
	담당자명	허진웅	전화번호	061-540-6407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제8조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시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동계 현황 수집에 있어 '성별 현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생략)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성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 (생략)
2	제9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성별/연령/인종/장애 등 근로자의 특성 및 산업 분야를 고려하도록 명시할 필요 있음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단, 각 호의 사업 추진 시 성별, 연령, 인종, 장애 등 근로자의 특성 및 산업분야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생략)

2023년 03월 03일

경제에너지과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진 도 군

수신 경제에너지과장
(경유)
제목 「진도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1. 경제에너지과-5571(2023.2.13.) 호와 관련입니다.

2. 「진도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하오니, 그 반영계획서를 2023. 3. 9.(목) 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영계획서 제출방법 (GIA 시스템)
1. 나의페이지 > 나의할일 > 성별영향평가대기 > 나의과제 – 검토의견통보서의 상태값인 [통보 (개선)] 클릭
2. 검토의견통보서의 개선의견 내용을 확인 후 오른쪽 하단의 「반영계획서 작성」 단추를 클릭하여 반영 계획 및 결과 작성 후 저장
3. 저장 단추 오른쪽의 기안 단추를 클릭하여 체크리스트 (성별영향평가서) 기안 단계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안 결재 진행

※ 시스템 사용 문의 :
GIA시스템 콜센터 (T. 02-3789-4450)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문서관리카드 경제에너지과-7428 1/2

진 도 군 수 **관인생략**

공무직	이은하	가족정책담당	박지현	가족행복과장	전결 2023. 2. 24. 오승민

협조자

시행 가족행복과-7629 (2023. 2. 24.) 접수 경제에너지과-7428 (2023. 2. 24.)

우 58915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 http://www.jindo.go.kr

전화번호 061-540-1265 팩스번호 061-540-0504 / lah13315@korea.kr / 대국민 공개

내 삶을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온(ON)!

※서판리카드 경제에너지과-7428 2/2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전남진도006			
정 책 명	진도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부서명	경제에너지과		
	담당자명	허진웅	전화번호	061-540-6407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2월 1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경제에너지과)	진도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안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의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과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은 성별영향평가 지표.성별특성 반영에 해당.노동안전보건증진을 위해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등을 고려한 개선이 필요

○제8조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시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수집에 있어'성별 현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제9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성별/연령/인종/장애 등 근로자의 특성 및 산업분야를 고려하도록 명시할 필요 있음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생략)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생략)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성별 실태 자료	

		분석 ~(생략)	수집 및 분석 ~(생략)	
	2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략)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단, 각 호의 사업 추진 시 성별, 연령, 인종, 장애 등 근로자의 특성 및 산업분야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생략)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3년 3월 9일 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2월 23일

진도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은하/061-540-1265)

경제에너지과장 귀하

진 도 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진도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진도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및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2. 기획홍보실장과 총무과장은 붙임 예고문을 군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군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진도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2. 15. ~ 3. 7.(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 : 경제에너지과 지역경제팀(☎ 061-540-6407)

붙임 1. 2023년2월10일-a0 공고결재.
2. 진도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문.

진 도 군 수 진도군수인

수신자 노, 부, 당

주무관 허진룡 시역경제팀장 곽현아 경제에너지과 전결 2023. 2. 13. 장 이용복
협조자
시행 경제에너지과-5572 (2023. 2. 13.) 접수
우 58915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울마길 25, 진도군청 / http://www.jindo.go.kr
전화번호 061-540-6407 팩스번호 061-540-6449 / jindo1810@korea.kr / 내부인 공개
나 삶을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온(ON)!

문서번호	경제에너지과-5226
보존기간	
결재일자	2023. 2
공개구분	비공개(5)

담당자	지역상생팀	경제에너지과장	부군수	군수	결재
허진웅	곽현아	이용복	우호섭		
협조	법무의회팀장 박현주 기획홍보실장 허두진				

진도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 계획

Jindo

진 도 군
(경제에너지과)

진도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 계획

Ⅰ 제정 이유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 규정에 의거 진도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함.

Ⅱ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적용범위 및 군수의 책무(안 제3조~제4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업주의 협조, 협력체계 구성 등 (안 제5조~제7조)

○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산업재해 예방지원사업 (안 제8조~제9조)

○ 안전보건지킴이,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제10조~제11조)

Ⅲ 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Ⅳ 관계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Ⅴ 향후 추진계획

○ 2023. 02. : 입법예고

○ 2023. 03. :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

○ 2023. 03. : 조례안 군의회 제출 및 조례 공포

붙 임 : 진도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재정(안) 1부